

제 호

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증

1. 명 칭:

2. 설치자:

3. 위 치:

「평생교육법」 제20조의2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하였기에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.

년 월 일

교 육 감 직인

주: 1. 관계 법령 및 운영규칙을 준수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.
2. 이 증서가 실효되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에 반환하여야 합니다.